

심사보고서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7
----------	-----

2024. 4. 30.(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4년 4월 12일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2024년 4월 23일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성범)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등의 제명 및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표기법 등 정비
- 상위법령의 위임조례인 경우 위임근거 명확화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 사용 정비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등의 제명 및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18개)

1)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2023. 6. 27.개정, 2023. 6. 27. 시행)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5호)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2)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 「지방재정법」 개정(2023. 4. 11.개정, 2024. 1. 12.시행)되어 인용조문이 제37조의2가 제37조의3으로 이동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제37조의2 → 제37조의3

3)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폐지(2023. 6. 9.폐지, 2023. 7. 10.시행)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6. 9.제정, 2023. 7. 10.시행) 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폐지(2023. 7. 7.폐지, 2023. 7. 10.시행)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2023. 7. 7.제정, 2023. 7. 10.시행) 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4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4)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2015. 5. 18.개정, 2015. 8. 19.시행)되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제명 띄어쓰기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1조제2항제3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5)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명에 맞게 인용 조문의 제명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5호)

- 「학교체육진흥법」 → 「학교체육 진흥법」

6)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 1. 15.개정, 2020. 1. 16.시행)되어 인용하고 있는 제38조의4가 제122조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7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7)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개정(2018. 1. 26.개정, 2016. 1. 26. 시행)되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으로 제명 띄어쓰기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6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8)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2010. 3. 17.개정, 2010. 6. 18.시행)되어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으로 제명 띄어쓰기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1조)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9)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015. 12. 31.개정, 2016. 1. 1.시행)되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제명 띄어쓰기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2조)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10)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용한 조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명에 맞게 정비(안 제8조)

-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2010. 11. 10.개정, 2010. 11. 10.시행)되어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제명 띄어쓰기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안 제3조)

- 「공무원여비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12)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2023. 6. 27.개정, 2023. 6. 27.시행)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13)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행정절차법」 개정(2019. 12. 10.개정, 2020. 6. 11.시행)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규정(제39조의3)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9조제2항)

- 제39조의2 → 제39조의3

1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2023. 6. 27.개정, 2023. 6. 27.시행)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1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도서관법」 전부개정(2021. 12. 7.개정, 2022. 12. 8.시행)되어 공공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도서관법」 제27조에서 제29조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4조제1항, 안제35조제1항, 안 제47조)
 -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 →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
 - 법 제32조 →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
- 「청소년기본법」 개정(2014. 3. 24.개정, 2014. 3. 24.시행)되어 「청소년 기본법」으로 제명 띄어쓰기 변경됨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 (안제46조의2제1항)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16)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 4. 7.개정, 2020. 4. 7.시행)되어 인용하고 있는 제59조제6항이 제59조7항으로 이동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 7. 28.개정, 2020. 7. 30.시행)되어 인용하고 있는 제22조의5제5항이 제22조의5제6항으로 이동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제명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제1항, 안 제2조제5항, 안 제8조제1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유아교육법시행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영 제59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5항
→ 영 제59조제7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제6항

17)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1. 4. 6.개정, 2021. 4. 6.시행)되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6조제2항제3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 기재오류 정비(안 제2조제1항)
 - 제2항 → 제2조제2항

나).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 및 표기법 등 정비(2개)

1)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2018. 8. 14.개정, 2018. 12. 13.시행)되어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인”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2항제4호)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및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24. 2. 16.개정, 2024. 3. 1.시행)에 따라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이 본원의 팀으로 편제됨에 따라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을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
 - 등급 라 진천군의 문백면 농다리로 536-43(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삭제

다). 상위법령의 위임조례의 경우 위임근거 명확화(2개)

1)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제2항에 따라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위임 조례로 위임근거 명확화(안 제1조)
 - 목적 조항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 추가

2)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위임 조례로 위임근거 명확화(안 제1조)

- 목적 조항에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 추가

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 사용 정비(7개)

1)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정의한 것을 바로 약칭하지 않고, 용어 정의한 후 최초로 그 용어가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1항)

2)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9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2조제1호에서 “법”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약칭한 용어로 변경하여 정비(안 제9조제1항)

3)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을 제2조제1호에서 “법”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약칭한 용어로 변경하여 정비(안 제4조제2항제3호)

4)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약칭은 약칭이 필요한 용어나 문장이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규정(안 제3조, 안 제7조제4항)

5)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 목적 조항에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목적 조항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6)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목적 조항에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목적 조항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7)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목적 조항에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목적 조항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규정(안 제1조, 안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개정 이유 검토

- 본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용어 및 표기법, 위임근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나) 개정 주요 검토의견

-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18개는 상위법령 등의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및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등 2개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표기법 등을 정비하는 것임

- ①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2018. 8. 14.개정, 2018. 12. 13.시행)되어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인”으로 변경
- ②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24. 2. 16.개정, 2024. 3. 1. 시행)에 따라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이 본원의 팀으로 편제됨에 따라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을 삭제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등 2개는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조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임

- 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제2항에 따라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위임 조례로 목적 조항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 추가하여 위임근거 명확화
- ②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위임 조례로 목적 조항에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 추가하여 위임근거 명확화

-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 사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괄 개정하는 것임

- 따라서, 본 28개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일괄 반영과 자치법규의 입법 안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며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그 밖에 사전절차 및 입법안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보완, 수정하는 등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란”을 “구성원”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원에게”를 “충북교육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7조의2”를 “제37조의3”으로 한다.

제4조(「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6조(「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학교체육진흥법」”을 “「학교체육 진흥법」”으로 한다.

제7조(「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법 제50조”로 한다.

제8조(「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로 한다.

제9조(「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충청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유아교육법」 제19조의2”를 “법 제19조의2”로 한다.

제11조(「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교장”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학교장”으로 한다.

제12조(「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을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으로 한다.

제13조(「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14조(「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5조(「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16조(「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17조(「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로 한다.

제18조(「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한다.

제20조(「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제21조(「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를 각각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 중 “법 제32조”를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로 한다.

제22조(「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및 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설치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및 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4조(「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59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5항”을 “영 제59조제7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7조(「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호(□)의 등급 라의 진천군의 문백면 농다리로 536-43을 삭제한다.

제28조(「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2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충북교육 <u>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u>”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도민들을 말한다.</p> <p>3.·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구성원</u>”이란 ----- ----- -----.</p> <p>3.·4. (현행과 같음)</p>
<p>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u>구성원에게</u>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성원의 교육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 ----- ---- <u>충북교육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u> --- ----- -----.</p> <p>② (현행과 같음)</p>

2.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53조에 따른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 -----.</p>

4.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p>
<p>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p>	<p>제4조(지원대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p>

5.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생략)</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p> <p>1. · 2. (생략)</p> <p>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p> <p>4.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 ----</p> <p>4.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6.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건강체력교실”이란 「<u>학교체육진흥법</u>」 제9조에 따라 학교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학교체육진흥법</u>」 ----- ----- ----- -----.</p>

7.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9조(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질병 관리청·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 ·중등교육법」 제64조, 「감 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50조에 따라 휴교 및 휴 업을 결정할 수 있다.</p> <p>② ~ ⑥ (생략)</p>	<p>제9조(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 ----- ----- ---- <u>법 제50조</u>-----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8.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7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 ①·② (생략)</p> <p>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7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9.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6조(준용) 교직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조(준용) ----- -----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p>

10.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4조(모집·선발 계획) ① (생략)</p> <p>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2. (생략)</p> <p>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p> <p>4. ~ 6. (생략)</p> <p>③·④ (생략)</p>	<p>제4조(모집·선발 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법 제19조의2</u>----- ----- -----</p> <p>4. ~ 6.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1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3조(학교장의 책무) <u>학교장</u>은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조(학교장의 책무) <u>학교의 장</u> (이하 “<u>학교장</u>” 이라 한다)----- ----- -----.</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u>학교의 장</u>(이하 “<u>학교장</u>” 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학교장</u>----- ----- -----.</p>

12.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에</u>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u>----- ----- -----.</p>

14.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수당 등) -----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 -- ----- ----- -----.</p>

1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공무원여비규정</u>」을 준용한다.</p>	<p>제3조(준용) ----- ----- 「<u>공무원 여비 규정</u>」----- -.</p>

16.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 ----- -----.</p>

17.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통학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 -----.</p>

18.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u>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충청북도 교육감</u> ----- ----- ----- ----- ----- -----.</p>
<p>제2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자는 <u>교육감</u>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한다. ② (생략)</p>	<p>제2조(상담대상자 등) ① ----- --- <u>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u> -----. ② (현행과 같음)</p>

19.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9조(공청회)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u>제39조의2</u>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9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제39조의3</u>-----</p> <p>-----.</p>

20.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4조(발신 명의)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발신 명의) ----- -----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제13조----- -----.</p>

2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14조(설치) ① <u>법 제32조</u> 및 「<u>도서관법</u>」 제27조에 따라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도서관(이하 “교육도서관”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14조(설치) ① <u>법 제32조</u> 및 「<u>도서관법</u>」 제29조-----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5조(설치) ① <u>법 제32조</u> 및 「<u>도서관법</u>」 제27조에 따라 정보·문화 교육센터로의 기능 수행 및 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 계발, 정서순화 등 문화·예술·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이하 “중원교육문화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35조(설치) ① <u>법 제32조</u> 및 「<u>도서관법</u>」 제29조-----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6조의2(설치) ① <u>법 제32조</u> 및 <u>청소년기본법 제18조</u>에 따라 해양수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함양하고, 교직원의 연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해양교육원(이하 “해양교육원” 이라 한</p>	<p>제46조의2(설치) ① ----- 「<u>청소년 기본법</u>」 제18조----- ----- ----- -----.</p>

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47조(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설치)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
-----.

2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u>위원회</u> (심의회·협의회 및 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교육규칙 및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u>설치된 각종 위원회</u>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 ----- <u>위원회</u>----- ----- ----- ----- ----- -----.</p> <p>제2조(적용) ①----- ----- ----- --- <u>설치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u>(심의회·협의회 및 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23.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u>건설기술자</u>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p> <p>5. 삭제</p> <p>6. (생략)</p> <p>③·④ (생략)</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건설기술인</u> ----- ----- -----</p> <p>6.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2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병설 및 통합운영학교의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p> <p>② ~ ④ (생략)</p> <p>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의 경우 위원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p> <p>1.·2. (생략)</p>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 ----- -----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제3항----- ----- ----- ----- -----.</p> <p>1.·2.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② ~ ⑥ (생략)</p>	<p>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7항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5제6항-----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25.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하에 있는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충청북도교육감</u> ----- ----- ----- ----- -----.</p>
<p>제3조(보조대상)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u>교육감이</u> 행하는 보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행한다.</p> <p>1.·2. (생략)</p>	<p>제3조(보조대상) ----- ----- <u>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 ----- ----- -----.</p> <p>1.·2. (현행과 같음)</p>

26.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 ----- -----.</p>
<p>제6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① (생략) ② 직속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및 제천학생회관 수영장의 사용료를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1.·2. (생략)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4. ~ 6. (생략)</p>	<p>제6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2. (현행과 같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6. (현행과 같음)</p>

2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급대상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특수지급대상(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제2조 관련)				특수지급대상(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제2조 관련)						
<input type="checkbox"/> 벽지				<input type="checkbox"/> 벽지						
등급	시·군	위치	기관명	등급	시·군	위치	기관명			
가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학생수련원	가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다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다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라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라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1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1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10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10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			
제천시	제천시	백운면 화당로 33	화당초등학교	제천시	제천시	백운면 화당로 33	화당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초등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중학교			한수면 미륵송계로6길 12	한송중학교			
보은군	보은군	마로면 세종1길 2	세종초등학교	보은군	보은군	마로면 세종1길 2	세종초등학교			
		회남면 회남로 1901-1	회남초등학교			회남면 회남로 1901-1	회남초등학교			
옥천군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3-2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옥천군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3-2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동이면 우산로2길 23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			동이면 우산로2길 23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			
영동군	영동군	용화면 용화양강로 32	용화초등학교	영동군	영동군	용화면 용화양강로 32	용화초등학교			
진천군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진천군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3	충청북도교육청유원 중부분원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은여울중학교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은여울중학교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은여울고등학교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은여울고등학교							
괴산군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오가5길 1	장연초등학교	괴산군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오가5길 1	장연초등학교			
		청천면 송면2길 13	송면초등학교			청천면 송면2길 13	송면초등학교			
		청천면 문장로 2915	송면중학교			청천면 문장로 2915	송면중학교			
단양군	단양군	가곡면 대대길 51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단양군	단양군	가곡면 대대길 51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어상천면 어상천로 930	어상천초등학교			어상천면 어상천로 930	어상천초등학교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영춘초등학교별방분교장			영춘면 별방창원로 449	영춘초등학교별방분교장			
		영춘면 온달평강로 63-6	영춘초등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63-6	영춘초등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105	영춘중학교			영춘면 온달평강로 105	영춘중학교			
		영춘면 장발선돌길 14	단양소백산중학교			영춘면 장발선돌길 14	단양소백산중학교			
		적성면 적성로 453	대가초등학교			적성면 적성로 453	대가초등학교			

28.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삭제</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 제2조 제2항----- ----- -----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13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를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
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를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
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
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334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
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
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1. 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1. 12.>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 12.>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본조신설 2014. 5. 28.]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23. 4. 11.>]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 15. 생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6.] [대통령령 제34140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 ③ 생략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6호, 2022. 4. 26., 일부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4. 9.] [충청북도조례 제4533호, 2021. 4. 9.,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 6.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24. 1. 1.] [충청북도교육규칙 제875호, 2023. 12. 29., 전부개정]

□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17.] [충청북도조례 제4270호, 2019. 5. 17.,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모집“이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하고 접수하는 과정을 말 한다.
3.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4호, 2023. 4. 18., 일부개정]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3.1.] [충청북도조례 제5071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2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공감·소통·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과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며 참여와 소통으로 상생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제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53에 둔다. 다만, 국제교육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26,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1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인석로 381에 둔다.

제24조(원장) ①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삭제 <2024. 2. 16.>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0. 8. 6.] [충청북도조례 제3271호, 2010. 8. 6., 타법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 행정절차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10.]

□ 도서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11. 22.] [대통령령 제32999호, 2022. 11. 22., 일부개정]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① ~ ⑤ 생략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 2020. 4. 7.>

⑦ 생략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5는 제22조의6으로 이동 <2020. 7. 28.>]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 ⑥ 생략

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 9. 15., 2020. 4. 7.>

⑧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27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 ③ 생략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0. 27.] [법률 제18844호, 2022. 4. 26., 일부개정]

-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